

소상공인 원상복구 지원사업 희망업체 모집 공고

도내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'23년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3. 02. 20.

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

I 소상공인 원상복구 지원 사업 개요

1. 사업명 : 2023년 소상공인 원상복구 지원사업
2. 사업기간 : 2023. 02. 20. ~ 예산 소진시까지
3. 지원내용
 - 폐업 진단 및 사업정리 관련 컨설팅 제공(선택 사항)
 - 원상복구 비용 지원

II 지원내용 및 절차

1. 신청대상 : 사업정리 검토 중 또는 폐업신고 180일 이내*인 제주도내 소상공인 *사업신청일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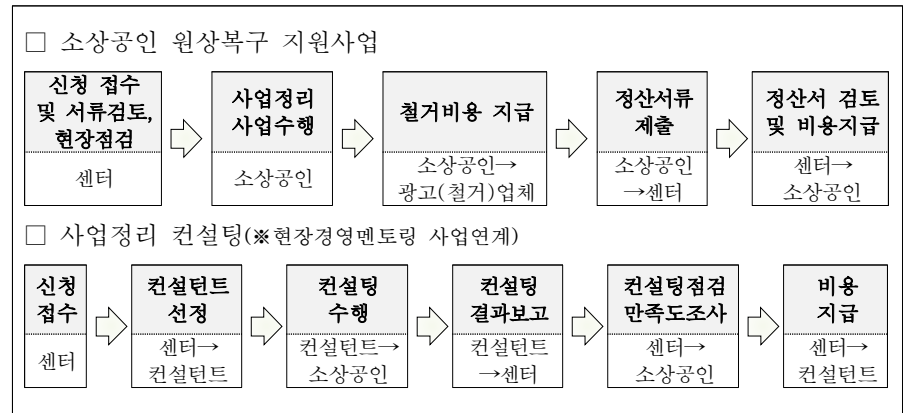
※ 제외대상

- ①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등
※ [붙임1]에 해당 업종
- ② 철거공사 진행·완료 자
- ③ 자가건물 사용 사업자
- ④ 2019~2022년 사업정리 사업 수혜자
※ 수혜연도 상관없이 영업양도광고비 수혜자는 원상복구비용 신청가능

2. 신청기간 : 2023. 02. 20. ~ 예산 소진시까지
3. 지원내용

구분	사업내용	지원규모	지원금액	비고
원상복구 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 원상복구 및 철거비용 등 ※ (지원제외) 단순집기 처분, 단순 사업장 이전(이사비용 등), 증빙되지 않는 인건비 및 비용, 용역 식비 등 	25개 업체	최대 200만원 이내 (부가세제외)	
사업정리 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컨설팅 희망 자에 한해서 실시 • 컨설팅 2회 이내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전진단 - 사업정리 행정절차(세무, 노무 등) 재기지원정보 제공 	-	-	현장경영멘토링 연계

4. 지원절차



5. 지원대상자 선정 및 취소 기준

1)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

- 제출신청서 기준으로 원상복구 지원 대상자 선정(서류미비시 선정제외)
- 선정 여부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
-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선정기준
- 다중 사업자 일 경우 한 개의 사업장만 신청 가능
 -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여 계약 만료가 불가피한 소상공인으로 점포의 원상복구 및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

- 사업주의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

2)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

-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진행한 경우
- 타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
-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
- 지정기한*내 지원금신청서 및 사업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

*** 지정기한 : 사업 대상자 선정 후 30일 이내**

- 허위·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
- 기타 센터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선정 취소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

※ 선정 취소된 경우, 당해 연도 동일사업 신청불가

6. 외주업체(철거업체 또는 광고업체) 선택 시 유의사항

- 소상공인 사업자는 사업내용과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 함.

7. 지원금 유의사항

- 사업 신청자가 공사 대금에 대해 선 지출 후, 제출 서류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자 계좌로 송금
- 카드결제
 - 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영수증 제출을 원칙으로 함.
- 계좌이체
 - 사업비용은 대표자(또는 사업장)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. (현금 거래는 인정하지 않음)
 - 지출증빙은 은행에서 행하는 입급증 또는 입급통장내역으로 가능하며, 입급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함.
 - 부가세 등 사후환급금과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.

1. 사업정리 지원 사업 신청서류

구분	제출서류
사업신청 시 (홈페이지/ 팩스/방문접수)	① 원상복구 지원사업 신청서 [별지 1]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신청업체용) [별지 2]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혹은 폐업사실증명원) ④ 시설철거비용 견적서 ⑤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⑥ 임대차계약서
사업완료 후 (방문접수)	⑦ 원상복구 지원금 신청서 [별지 3] ⑧ 사업완료 확인서 [별지 4] ⑨ 폐업사실증명원 ⑩ 지원금 수령용 통장사본(대표자명의/사업자명의) ⑪ 지출증빙내역 원본 - (카드결제시) 카드영수증 - (계좌이체시)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, 공사업체 통장사본 ⑫ 공사완료 확인서 ⑬ 만족도조사표 [별지 7]

※ 선정통보를 받고 지정기한 내 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 처리하오니, 기간 엄수하여 완료확인서([별지3-5] 참고)및 증빙서류 제출 바랍니다.

2. 제출방법 : 홈페이지 / 팩스 / 방문 접수

-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
- 홈페이지 : www.jejusc.kr
- 팩스번호 : 064-758-5712
- 주소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,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층(이도아동)

3. 문의처

-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
Tel. 064-800-7603

4.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본 모집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서류의 기재착오, 연락불능,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

III 제출서류 및 문의처

제출자의 책임입니다.

-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,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.

붙임 1 지원 제외업종 총괄표

표준산업분류	업종
56211	일반유흥 주점업
56212	무도유흥 주점업
68	부동산업. 다만,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은 제외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46102 중	담배중개업
46107 중	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
46416 및	모피제품 도매업.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17 중	
47811 중	약국, 한약국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. 다만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제외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	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영위하는 경우
	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·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·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

구분	한국표준산업분류	세부업종
도박 및 게임 관련	•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(33409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	• 장난감 및 취미, 오락용품 도매업(46463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	• 게임용구,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(47640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	•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(47911)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(47912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도소매업
	•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(76390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	•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5821) 중	•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•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(63999) 중	•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, 게임아바타중개업
	•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(75999) 중	•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	•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(58122) 중	• 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	•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(91113)	•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•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(96992)	• 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	
건전 문화 관련	•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(47859) 중	• 성인용품 판매점
	•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(75330) 중	• 흥신소
	• 오락장 운영업(9122) 중	•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•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(96999) 중	•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투기 조장	• 경영 컨설팅업(71531) 중	• 기획부동산업 ^{주)}

주) (운영형태)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(330㎡, 660㎡ 등)로 분할한 후,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(전화권유 판매)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(시세의 3~5배)에 매도하는 업체